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7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2월 23일

나. 제 안 자: 김지수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3. 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지수 의원)

□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재정비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 수행사업, 이용제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8조)
-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건강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2. 27. ~ 3. 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우리 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u>정신건강증진</u>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u>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6조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u>경제적 부담의</u> <u>경감 등</u>을 명시함
- **안 제8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현 행

제6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업무
- 4.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에 관한 업무
- 5.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 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8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5. 정신질환자와 그 기족의 교육, 의료비 등 자원 업무
- 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 8. 정신건강증진시업에 관한 자문 및 조시연구
- 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 지원개발
- 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 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제한 규정을 명시함

M11조(0)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붙임 관계법령 참고]
-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 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정신보건법」이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2017. 5. 30.)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 센터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8년 제정된 것으로

¹⁾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 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하고자 운영

-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근거 법령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면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었고, 이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로 확인²)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통계³)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연평균 4.2% 증가율[2009년 206만 7000명 ➡ 2019년 311만 6000명]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3)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2021)

-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하여 수행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 *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으로 첫 번째 상병

²⁾ 출처: 2022년 2분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조사방법: 분기별 조사(3·6·9·12월)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 조사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 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 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총 16개 항목

⁻ 주요 조사결과

가. (우울) 2022년 6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u>2019년(3.2%)의 5배가 넘는 수치</u>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임

나. **(자살생각률)** 자살생각률은 2022년 6월 12.7%로 3월(11.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초기(2020년 3월 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u>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6%)과 비교</u> 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다양한 문제들이 일상회복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체계 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 지원하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 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 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